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환 경 영 향 평 가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한화진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기준을 개선하고, 법조문의 이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문구를 개정하고자 함.

「환경영향평가법」 제10조의2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대한 평가 실시여부를 5년마다 검토하여 조정한 내용을 반영하고,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계획·사업 및 협의시기에 대하여 각 법령의 제명 및 조문을 현행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시 사업내용 변경 기준을 직전 협의한 사업내용에서 누적하여 산정하도록 개선하고, 법조문 이해를 명확히 하기 위한 문구 개정(안 제55조)

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조정(안 별표 2)

- 1) 신규편입: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업지역기본계획,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산업정비구역계획,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산업혁신구역계획

2) 대상제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른 특구관리계획,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수도권매립지 환경관리계획

3) 대상조정: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개발기본계획에서 정책계획으로 변경

다. 법령제명 및 조문 현행화 (안 별표 2, 안 별표 2의2, 안 별표 3, 안 별표 4)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지

2) 입법예고 전

3) 규제심사 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유”란을 “사유”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재협의 또는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변경협의를 한 경우에는 협의기관의 장과 최종 협의된 협의 내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변경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및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재협의 내용에 반영된 규모보다 10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따라 협의된”을 “따른 협의 내용에 반영된”으로, “(해당 사업의 공사를 관리하기 위한 임시 현장사무실을 설치한 경우 및 별표 3 제3호다목 2) 및 라목2)의 건설사업으로서 토지의 형질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그 면적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누적된 변경으로 증가한 사업규모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공사를 관리하기 위한 임시 현장사무실을 설치한 경우 및 별표 3 제3호다목2) 및 라목2)의 건설사업으로서 토지의 형질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그 면적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55조제2항제4호 중 “및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재협의 내용”을 “내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따라 통보된”을 “따른”으로,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및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재협의 내용에 반영된 규모보다 30퍼센트”를 “30퍼센트”로 한다.

5.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포함된 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의 면적을 토지이용계획으로 변경하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부지면적의 1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별표 2, 별표 2의2, 별표 3,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협의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협의기관의 장에게 변경협의를 요청한 사업에 대하여는 제55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대상계획·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협의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한 계획·사업에 대하여는 별표 2, 별표 2의2,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5조(환경보전방안 검토요청 시 제출서류 등) ① (생 략) ② 법 제33조제3항에서 “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u>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5조(환경보전방안 검토요청 시 제출서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u> ”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재협의 또는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변경협의를 한 경우에는 협의기관의 장과 최종 협의된 협의 내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u>변경이</u>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업·시설 규모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이미 협의한 사업 계획 등에 따라 준공된 선형 사업이 추가로 증가되는 경우 또는 선형사업(별표 3 제7호가목 및 나목의 철도의 건설 사업은 길이가 4킬로미터 이상인 사업으로 한정한다)이 법 제24조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최소 지역범위에서	2. ----- ----- ---. ----- ----- ----- ----- ----- ----- ----- ----- -----

증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약의 내용에 반영된 사업
· 시설 규모의 1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누적
된 변경으로 증가한 규모
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약 및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재협약의 내용에 반영
된 규모보다 10퍼센트 이
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협약된 사업규모의 증가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사업
의 공사를 관리하기 위한
임시 현장사무실을 설치한
경우 및 별표 3 제3호다목
2) 및 라목2)의 건설사업으
로서 토지의 형질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그 면
적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가. -----

---- 10퍼센트 -----

나.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약의 내용에 반영된 사업
규모의 증가가 법 제43조
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증
가한 사업규모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
다). 다만, 해당 사업의 공
사를 관리하기 위한 임시
현장사무실을 설치한 경우
및 별표 3 제3호다목2) 및
라목2)의 건설사업으로서
토지의 형질 변경을 수반

하지 않는 경우 그 면적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삭 제

4.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
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의 5퍼
센트를 초과하여 토지이용계
획을 변경하거나, 해당 지역
중 변경되는 면적이 1만제곱
미터 이상인 경우(누적된 변
경으로 개발하려는 규모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및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재협
의 내용에 반영된 규모의 5퍼
센트를 초과하거나 1만제곱미
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5.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포함된 부지면적(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재협의
또는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변경협의를 한 경우에는 최종
협이에 반영된 전체 부지면적
을 말한다)의 15퍼센트 이상
의 면적을 토지이용계획으로
변경하는 경우. 이 경우 법 제
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법 제

[illegible]

에 _____

5. -----
 ---- 포함된 부지면적의 15퍼
센트 이상의 면적을 토지이용
계획으로 변경하는 경우(누적
된 변경으로 부지면적의 15퍼
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

32조제1항에 따른 재협의 또는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변경협의를 한 후 해당 협의에 따른 최종 부지면적의 15퍼센트 미만으로 토지이용계획이 여러 차례 변경된 때에는 그 여러 차례 변경된 면적을 누적하여 토지이용계획으로 변경하는 면적을 산정한다.

6. (생략)

7.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통보
된 협의 내용보다 배출되는
오염물질(「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및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이 설정된 오염물질을 말한
다)이 30퍼센트 이상 증가(누
적된 변경으로 증가한 규모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및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재
협의 내용에 반영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포함
한다)되거나 새로운 오염물질
이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이상으로 배출되는 경우

③ (생략)

6. (현행과 같음)

7. 따른

30퍼 센트

③ (현행과 같음)

[별지]

[별표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

(제7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

1. 정책계획

구분	정책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가. 도시의 개발	1) 「 <u>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u> 」 제9조제1항에 따른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2) (생략) 3) (신설) 「 <u>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u> 」 제6조에 따른 공업지역기본계획	「 <u>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u> 」 제9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대기관리권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때 (생략) (신설) 「 <u>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u> 」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립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나. 항만의 건설	1) (삭제)「 <u>연안관리법</u> 」 제6조제1항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 2) (생략)	(삭제)「 <u>연안관리법</u> 」 제6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생략)
다. (생략)	1) ~ 2) (생략)	(생략)
라. 수자원의 개발	1) (생략) 2) (생략) 3) ~ 9) (생략)	(생략) 「 <u>물환경보전법</u> 」 제24조제3항에 따라 <u>유역환경청장이 관계 시·도지사 및 4대강수계법에 따른 관계 수계관리위원회와 협의할 때</u> (생략)

구분	정책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마. 관광단지의 개발	1) (생략) 2) 「관광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3) (생략) 4) ~ 6) (생략)	(생략) (생략) 「온천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와의 협의를 하는 때 (생략)
바. 산지의 개발	1) (생략) 2) (생략) 3) ~ 4) (생략)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른 전국임도기본계획 6) (생략)	「사방사업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때 「산림기본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때 (생략) (생략)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는 때
사. 특정지역의 개발	1) (생략) 2) ~ 3) (생략)	「농어촌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를 하는 때 (생략)
아. 폐기물·분뇨·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	1) (생략) 2) (2. 개발기본계획 거목 3)에서 이동) 「자원순환기본법」 제12	(생략)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

구분	정책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u>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u> 3) (기존 2)를 3)으로 변경) 「 <u>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u> 」 제5조에 따른 <u>가축분뇨 관리기본계획</u>	<u>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할 때</u> (생략)
자. (생략)	(생략)	(생략)
차. (신설) 항만의 개발	(신설) 「 <u>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u> 」 제7조에 따른 <u>해양공간관리계획</u>	(신설) 「 <u>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u> 」 제7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u>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u>

2. 개발기본계획

구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가. 도시의 개발	1) ~ 7) (생략) 8) (생략) 9) (생략) 10) 「 <u>공공주택 특별법</u> 」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11) (생략)	(생략) <u>「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u> (생략) <u>「공공주택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는 때</u> <u>「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제9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제안자에게 제안사업의 민간투자사업 추진 여부를 통지하기 전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무</u>

구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12) (생략) 13) (생략) 14) 「유통산업발전법」 제34조에 따른 <u>공동집배송센터 개발촉진지구</u>의 지정 15) (생략) 1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u>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u>의 지정	관청이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하기 전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는 때 (생략) (생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지정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는 때
나. 산업입지·산업단지 조성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u>제1호 차목(7)</u> 단서에 따른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의 지정 2) ~ 7) (생략) 8) (신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에 따른 산학융합 활성화계획 9) 기존 8)을 9)로 이동 10) 기존 9)를 10)으로 이동 11) 기존 10)을 11)로 이동 12) (신설)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산업정비구역계획 13) (신설)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산업혁신구역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u>제1호차목(7)</u> 단서에 따라 고시하기 전 (생략) (신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 제2항에 따라 산업통장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생략) (생략) (생략) (신설)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신설)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2항 및 제23조제3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구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다. (생략)	(생략)	(생략)
라. 항만의 건설	1) 「 <u>신항만건설 촉진법</u> 」 제5조 에 따른 <u>신항만건설 예정지역</u> 의 지정 2) ~ 8) (생략)	「 <u>신항만건설 촉진법</u> 」 제5조제2 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시·도지사 및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생략)
마. (생략)	1) ~ 3) (생략)	(생략)
바. 수자원의 개발	「 <u>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u> 」 제11조에 따 른 댐건설기본계획	「 <u>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u> 」 제11조제3항 에 따라 환경부장관이나 시· 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과 협의하는 때
사. 철도의 건설	1) (생략) 2) (생략)	(생략) 「 <u>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 관리에 관한 법률</u> 」 제7조제3 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 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와 협의하는 때
자. 하천의 이용 및 개발	1) (생략) 2) ~ 3) (생략)	「 <u>소하천정비법</u> 」 제6조제4항에 따라 관리청이 지방환경관서 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과 협의하는 때 (생략)
차. ~ 카. (생략)	(생략)	(생략)
타. 산지의 개발	1) (생략) 2) 「 <u>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 한 법률</u> 」 제25조에 따른 <u>산촌 진흥특화사업계획</u> 3) 「 <u>장사 등에 관한 법률</u> 」 제5 조제2항에 따른 <u>묘지·화장시 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u>	(생략) (생략) (생략)

구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u>수급에 관한 지역수급계획</u> 4) (생략)	(생략)
과. 특정지역의 개발	1) ~ 3) (생략) 4) (생략) 5) ~ 7) (생략) 8) (삭제)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34조에 따른 특구관리계획 9) (생략) 10) (생략) 11) ~ 13) (생략) 14) (생략) 15) ~ 23) (생략) 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2조에 따른 광역시설 계획 25) (생략) 26) (생략) 27) (생략)	(생략) 「농어촌정비법」 제94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삭제)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34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생략) 「석탄산업법」 제39조의8제2항 또는 제39조의9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u>중앙행정기관</u> 의 장과 협의하는 때 (생략)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u>중앙행정기관의 장·경기도지사 및 평택시장</u> 과 협의하는 때 (생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u>도지사가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u> 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u>중앙행정기관</u> 의 장과 협의하는 때 (생략)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도

구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28) ~ 33) (생략)	<u>지사가</u>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때 (생략)
하. 체육시설의 설치	1) (생략) 2) (생략)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u>특별자치시장</u>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거. 폐기물·분뇨·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	1) (생략) 2) (삭제)―「 <u>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u> 」 제8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기본계획 3) (1. 정책계획 아목 2)로 이동)―「 <u>자원순환기본법</u> 」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4) (생략) 5) (삭제)―「 <u>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u> 」 제5조제1항에 따른 수도권매립지 환경관리계획	(생략) (삭제)―「 <u>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u> 」 제8조제1항에 따라 <u>환경부장관</u> 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때 (1. 정책계획 아목 2)로 이동)―「 <u>자원순환기본법</u> 」 제12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u>환경부장관</u> 에게 승인을 요청할 때 (생략) (삭제)―「 <u>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u> 」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u>환경부장관</u> 의 승인을 받기 전
너. ~ 더. (생략)	(생략)	(생략)

비고

1. ~ 3. (생략)

4. (생략)

가. ~ 라. (생략)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구(같은 항 제7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는 제외한다)를 지정하거나, 같은 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9조 또는 제40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 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5. ~ 6. (생략)

[별표 2의2]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요청 시기

(제10조의2제1항 관련)

1. 정책계획

구분	정책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가. (삭제) —항만의 건설	1) (삭제) 「 연안관리법 」 제6조제1항에 따른 연안통합 관리계획	
나. ~ 라. (생략)	(생략)	(생략)

2. 개발기본계획

(생략)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제31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 관련)

구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1. 도시의 개발사업	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u>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u>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나. (생략) 다. ~ 마. (생략) 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사. ~ 파. (생략)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u>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u> 공급촉진지구계획 승인 전 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 전 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생략) (생략) (생략)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가. ~ 다. (생략)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다만, 가목부터 다목까지, 마목 또는 제13호사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공장용지 또는 산업용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생략) (생략)

구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관한 법률」 제33조제7항제3호에 따른 산업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 사. (생략)	(생략)
3. (생략)	(생략)	(생략)
4. 항만의 건설사업	가. ~ 나. (생략) 다.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및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항만에서의 준설사업 중 준설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준설량이 2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항로·정박지 등을 유지하기 위한 준설과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준설은 제외한다. 라.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1) 외곽시설로서 길이 300미터 이상 또는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2) 계류시설로서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3) 그 밖의 항만시설로서 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마. ~ 바. (생략)	(생략) 가) 「항만법」에 따라 시행하는 경우 중 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항만법」 제9조제9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고시 전 나) 「항만법」에 따라 시행하는 경우 중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계획의 허가 전 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전 다) 「신항만건설 촉진법」에 따라 시행하는 경우: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5. (생략)	(생략)	(생략)

구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6. 수자원의 개발사업	가. 「 <u>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u> 」 제2조제1호에 따른 댐 설치공사로서 만수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이 2천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 다. (생략)	「 <u>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u> 」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전 (생략)
7. ~ 8. (생략)	(생략)	(생략)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생략)	가) ~ 나) (생략) 다) 「 <u>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u> 」 제29조 및 제32조에 따른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경우: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전
10.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매립사업 중 사업면적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 <u>항만법</u> 」 제2조제2호·제3호에 따른 무역항, 연안항 및 「 <u>신항만 건설촉진법</u> 」 제2조제1호에 따른 신항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매립사업인 경우: 3만제곱미터 이상 2) 그 밖의 지역에서의 매립사업인 경우: 30만제곱미터 이상 나. (생략)	(생략) (생략)
11. ~ 12. (생략)	(생략)	(생략)
13. 특정지역의 개발사업	가. ~ 나. (생략) 다. (생략)	(생략)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

구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라. ~ 자. (생략) 차. 「 <u>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u> 」 제13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친수구역조 성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을 포 함한다)	인 전 (생략) 「 <u>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u> 」 제 13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14. (생략)	(생략)	(생략)
15. 폐기물 처리시 설·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 시설의 설치	가. (생략) 1) ~ 3) (생략) 4) (신설) <u>재활용시설 중 시멘트 소성 로로서 처리능력이 1일 100톤 이상인 것</u> 나. (생략) 1)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 른 분뇨처리시설 2) ~ 3) (생략)	(생략) (생략) (생략)
16. ~ 17. (생략)	(생략)	(생략)

[별표 4]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제59조 및 제61조제2항 관련)

구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규모	협의 요청시기
1. ~ 6. (생략)	(생략)	(생략)
7. 「수도법」, 「하천법」, 「소하천 정비법」 및 「지하수법」 적용지역	가. 「수도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광역상수도가 설치된 호소(湖沼)의 경계면(계획홍수위를 기준으로 한다)으로부터 상류로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팔당댐 상류의 남한강·북한강의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대책지역 I 권역으로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변구역의 지정대상이 되는 지역의 경계선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 마. (생략)	(생략) (생략)
8. ~ 9. (생략)	(생략)	(생략)

비고

1. ~ 9. (생략)

10.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의 조성 또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또는 치유의 숲 조성 사업의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은 토지의 형질변경, 흙·돌 등의 채취, 건축물 설치 등 실질적으로 개발이 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11. ~ 12. (생략)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환경정책과	
연 락 처	044-201-7276